

원산지 표시 위반

-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(誤認)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
-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
-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
- 위반되는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
- ※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(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(並科) 할 수 있음)
- ※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,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(대외무역법 제59조)

상표법 위반

-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,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
- ※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침해한 자에게는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 - ※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관한법을 제20조)

공산품안전관리제도

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위해, 재산상 피해 등에 따라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, 안전·품질표시, 어린이보호포장 대상공산품으로 유해도에 따라 차등 관리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

[KC 인증 및 문의처]

-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(KCL) | Tel. 02-2102-2744~5 / www.kcl.re.kr
-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KTR) | Tel. 1577-0091 / www.ktr.or.kr
-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(KTC) | Tel. 1899-7654 / www.ktc.re.kr
- 한국의류시험연구원(KATRI) | Tel. 02-3668-3000 / www.katri.re.kr
- FITI 시험연구원 | Tel. 02-3299-8000 / www.fiti.re.kr
- KOTITI 시험연구원 | Tel. 02-3451-7000 / kotiti.re.kr
- ※ 현장설명회 신청 문의 : 자치구 지역경제과(일자리경제과)에 문의 바람

불법제품 OUT!!

소비자와의 약속입니다!!!



[불법제품신고기관]

- 자치구 지역경제과 / 중구 시장경제과 | Tel. 02-3396-5057
-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| Tel. 02-2133-5375, Fax. 02-768-8852 E-mail. hyungi@seoul.go.kr
-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| Tel. 02-2133-5375, Fax. 02-768-8852 E-mail. hyungi@seoul.go.kr
- 한국제품안전협회(공산품 단속) | Tel. 02-890-8300, Fax. 02-890-8309 E-mail. kpsa@ksafety.kr
- 한국의류산업협회(지식재산권, 원산지 단속 지원) | Tel. 02-528-0115 E-mail. ippc@kaia.or.kr



KC 마크없는 불법의류 유통을 근절하자!

의류는 자율안전확인 신고 및 안전·품질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을 제조, 수입, 판매 및 영업에 사용해야 됩니다

□ KC마크가 필요한 의류품목 □

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

- ◎ 유아복 (3세 이하가 착용하는 의류)
 - 티셔츠, 바지, 남방, 원피스, 속옷류, 우주복, 점퍼 등
- ◎ 유아용품 (3세 이하가 사용하는 섬유제품)
 - 침구류, 신발류, 양말류, 가방류, 신생아용품 등

안전·품질표시대상

- ◎ 가정용섬유제품
 - 내의류, 중의류, 외의류, 침구류, 아동용섬유류
 - 기타제품류
 - 가방, 쿠션류, 방석류, 모기장, 덮개, 커튼, 수의 등



위반 시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.

- 불법 유아용 섬유제품(3세 이하)을 제조,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수거 파기
- 불법 의류를 제조, 수입, 판매,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, 수거 파기



“안전한 공산품” 판매의 첫걸음

“KC마크”가 필요한 완구/학용품

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

- 완구
 -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활동완구(흔들목마 등), 학습완구(스티커류 등), 봉제인형(형경인형 등), 게임완구(보드게임 등), 승용완구(자동차 등), 역할놀이완구(가장복 등), 운동완구(소프트볼 등), 유아완구(딸랑이 등), 블록완구(쌓기블록 등), 조종완구(헬기 등) 등
- 학용품
 - 크레용·크레파스, 연필류(심), 샤프연필(심), 지우개, 파스텔, 수채그림물감, 분필, 마킹펜류, 연필 깎이, 팔레트, 필통, 책받침, 색종이, 공책, 스케치북, 찰흙, 문구용 풀(이상 17종)

“KC마크”가 필요한 장신구 품목

안전·품질표시 대상

- 어린이용 장신구
 -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장식용으로 사용할 의도로 제작된 반지, 목걸이, 팔찌, 귀고리, 펜던트, 발찌, 머리장식품, 어린이용 시계, 미아방지용 팔찌(회용 제외) 등 신체부위에 착용하는 장식용품
- 접촉성 금속 장신구
 - 반지, 목걸이, 팔찌, 장식용 체인, 귀고리, 펜던트, 발찌, 손톱장식품, 피어싱, 배꼽찌, 손목시계, 시계줄, 머리장식품 등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(도금제품 포함)

위반 시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.

-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·진열 보관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-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
